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공고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신청서류에 의한 **심사평가 후** 예산 범위 내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경영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일체의 외주 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니, 일부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부실시공,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 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 유사과제 중복지원 등
- ◆ **시공(제작)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로 선정해야 하며, 업체당 최대 3개(신청업체)로 참여를 한정**합니다. 단, 스마트 기술구축 분야는 인천시 외 다른 지역 시공(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합니다.
- ◆ **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 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2023년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불가**합니다.

경영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
- ※ 개업연월일 2022. 8. 18일까지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임
-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지원대상(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 될 것[별표1]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접수기간 : 2023. 8. 18. (금) ~ 8. 31. (목) 18:00까지

- 방문 접수의 경우, 8. 29.(화) ~ 8. 31.(목) / 3일간 접수(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및 방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있게 신청 바랍니다.
- ※ 접수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개별신청 원칙)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1인 1건만 신청 가능)
- ※ 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
- 온라인 접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 준비 필수, 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 방문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신청 시)**

구분	제출서류 목록(필수)	제출방법
필수	① 지원신청 체크리스트[서식 제1호]	온라인 작성
	② 지원신청서[서식 제2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3호]	
	④ 견적서[서식 제4호] ※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에 한함. 업체 주소 및 연락처 필수 기재 - 시공(제작)업체 자체 견적서 사용 가능, 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 필수 - 간판 교체의 경우 시공(제작) 업체가 옥외광고업등록증 소지 여부 확인 - 부가세 포함하여 제출(*지원금 신청 시, 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 단위사업 내 세부항목을 복수 지원할 경우, 각 항목별 견적서 제출 - 홍보 및 광고 신청업체도 견적서 제출 필수!!!	온라인 제출 (홈페이지 업로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종 必)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발급처 : 정부24 및 위택스(온라인), 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 불가	
	⑦ 매출액 증빙서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 과세사업자 :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2022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발급처 : 정부24 및 홈택스(온라인), 행정복지센터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발급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정부24(https://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해당 시	소상공인확인서(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대체 서류) * 발 급 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발급방법 : 홈페이지 접속→온라인 자료 제출→제출자료 조회→신청서 작성 →진행 상황 확인→확인서 출력/수정	
	(우대사항) 센터 교육 수료증,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서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통합위임장[서식 제5호]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매출액 증빙서류 미제출), 매출액 정량평가 점수 최하점 부여
-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통합위임장[서식 제5호]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지원규모 : 125개 업체 내외 (※ 예산 한도 내,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서류 검토 (※신청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2차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평가(내·외부 심사위원 선정)

■ 선정기준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 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 : 매출기준, 업력, 2019~2021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명확성, 지원내용 및 비용의 적절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우대사항 (※ 우대항목별 각 5점씩 부여, 가점 최대 10점)
 - 2023년 본 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역량 강화 교육 수료업체
 - 2023년 본 센터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수진업체
 - 2022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업체
 - 인천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최종 선정 발표 : 2023년 9월 말 예정(※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업체는 문자로 개별통보 되오니, 신청서상에 대표자 핸드폰 번호 정확히 기재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①점포환경개선, ②홍보 및 광고, ③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3가지 분야 중에서 1개의 단위사업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지원 내용	한도액	지원업체 수
점포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옥외간판 교체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 90%)	85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제품 진열대, 수납대 등		
	<input type="checkbox"/> 입식 좌석 개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만 해당, 좌식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교체하는 경우만 지원)		
	<input type="checkbox"/> 내·외부인테리어(도배, 조명, 샷시, 닥트, 바닥 공사 등)		
홍보 및 광고	<input type="checkbox"/>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 90%)	21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및 배포(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등)		
	<input type="checkbox"/> 제품 포장(포장용기, 쇼핑백, 포장용 박스 등)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신문, 게시대 광고 등		
	<input type="checkbox"/> 기업 이미지(CI), 브랜드이미지(BI) 및 제품 브랜드 로고 제작		
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input type="checkbox"/> 매장 내 스마트기술 구축(키오스크, 디지털 사이니지, 무인 판매기, 스마트웨이팅 시스템 설치 등)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 90%)	19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위생관리(방역, 매장 소독, 청소용역, 살균기 설치 등)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전기, 가스, CCTV 구매 및 설치 등)		

※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은 지원 불가

※ 온라인 홍보 및 방역·청소 용역비용은 사업 기간(10~11월) 내에 수행한 것만 지원 가능

※ 온라인 홍보는 외주 대행업체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광고 및 검색 광고 등)

■ 신청 시 유의사항

- 3개의 단위사업 중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선택한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단,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에서만 지원함)

점포환경개선	(예시) 간판 교체 + 바닥 공사	→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 가능
홍보 및 광고	(예시) 온라인 홍보 + 판촉물 제작		
점포환경+홍보	(예시) 간판 교체 + 온라인 홍보	→	타 단위사업 간 세부지원 불가능

- 간판 신청 시,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만 시공(제작)업체로 선정 가능
- 자산성 물품, 렌탈 비용,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원 불가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제작(시공)은 지원금 지급 불가(※선정통보를 받은 후에 제작(시공) 추진)
- 선정업체는 경영개선 작업 완료 후에 11월 3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 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한(11/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 처리

■ 지원금액 :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자부담금 : 공급가액 10% 이상 + 부가세 10%

지원금액은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250~200만원)을 무조건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오니 신중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액 산출 예시

시공(제작) 내용	견적비용			센터 지원금액		자부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공급가액 90%	공급가액 10%이상	부가세	합계
간판 교체	300만원	30만원	330만원	250만원	50만원	30만원	80만원
간판 교체	250만원	25만원	275만원	225만원	25만원	25만원	50만원
온라인 홍보	220만원	22만원	242만원	198만원	22만원	22만원	44만원
cctv설치	200만원	20만원	220만원	18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 지원 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 화물차 구매 및 수리비용, 렌탈 비용,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 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위법 품목 등
- 지원가능 : 사업장 방역용 살균 소독기, 해충퇴치기, 손소독기, CCTV,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 등

■ 신청제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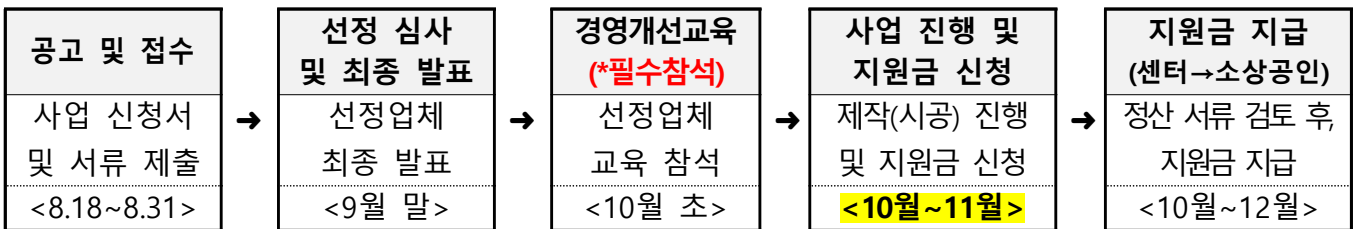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 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2023년 소상공인 창업 클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불가
- 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수혜업체 대표자 명의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
-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장이 거주 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 단,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홍보 및 광고 단위사업에 한해서 지원 가능(※ 타 단위사업 지원 불가)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예시) 신청인이 간판 제작업을 운영하면서 옥외광고물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22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
- **소상공인 기준(①매출액, ②종사자 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매출액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별표1]에 해당 될 것
 - ②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장기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또는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 지원 불가(ex.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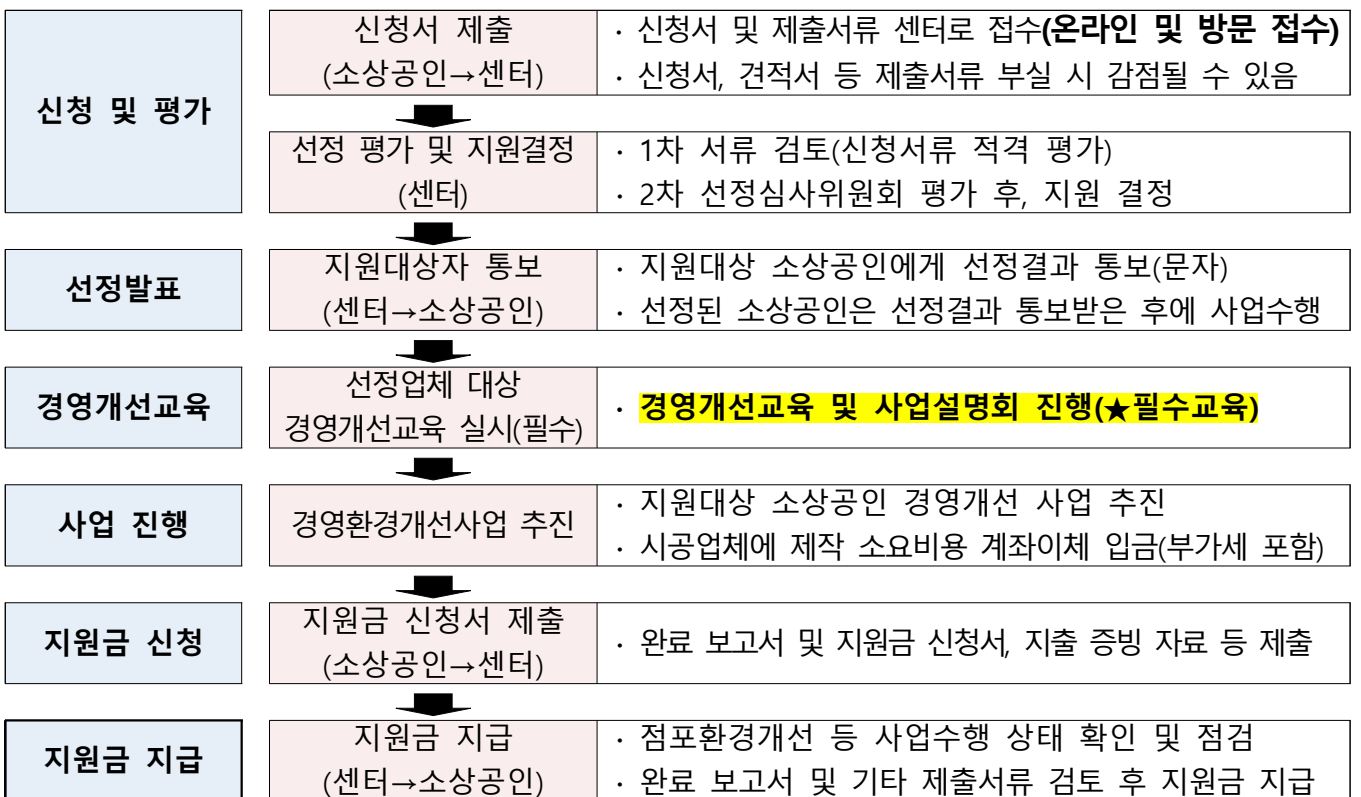
3. 추진절차

▣ 진행절차

- 지원금 지급은 선정업체가 **전체 공사(제작)비용을 선지출 후, 지출 증빙서류 첨부하여 센터로 지원금 신청서 제출**



▣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소요**

4.

선정 취소,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지원선정 취소

-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인정 기준

- (매출액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별표1]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시공한 경우**

-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시공업체 변경 및 과제 주요 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지정기한(11/30, 목요일) 내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 후 11월 30일까지 경영환경개선 시공(제작)을 마치고 완료 보고서 제출해야 함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률 위반, 과제부실 등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작(시공)내용 변경 및 포기

- 제출한 견적서 상 제작(시공)내용, 시공업체, 시공비용 등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승인요청서[별도 서식]**를 제출해야 함.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 불가함**)

- 사업변경승인요청서[별도 서식] 제출 후, **센터 변경 승인 후에 시공(제작) 작업을 시행해야 함**

-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제작)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로 감액 변경하여 지급**

- 지원사업 포기의 경우 **사업 포기신청서[별도 서식]**를 센터로 제출해야 함. 포기신청서 제출 요청 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 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선정업체는 시공(제작) 완료 후에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센터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은 최초 결정된 지원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제출기한(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제출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소요 비용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 취소

- **간판을 교체한 선정업체는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시공업체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

- 제출한 완료 보고서, 사진, 결과물, 지출 증빙자료 등 서류 검토 후 **정당한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급함**

- 신청인(대표자)과 외주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경영개선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별도 서식]	
	2.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별도 서식]	
	3.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 입금자 성명 및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및 계좌번호, 입금금액, 이체 일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 시공(제작)업체가 영세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제출	
	5. 제작(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공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시공(제작) 업체별로 사업자등록증 각각 제출	
	6. 통장 사본 (*지원금 받을 대표자 본인 또는 사업장 통장)	
추가 서류	간판 시공 (①, ② 필수 제출)	① (시공업체) 옥외광고업등록증 ② (신고대상)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군·구청 발급) (미신고대상)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비대상 확인서[별도 서식]
	홍보 및 광고	- 홍보물 제작 : 리플렛 및 카달로그(실사 첨부), 홍보물품(사진 첨부) - 제품 포장 : 제품 포장 용기 및 박스 사진 첨부 - 대중교통, 아파트 게시대 광고 등 : 결과보고서 등 첨부 ※ 업체명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업 진행 후 결과물 제출
	CCTV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별도 서식]
	방역 및 청소용역	위생 및 방역 결과보고서, 작업 중인 사진 첨부
	제작(시공)내용 변경 시	사업 내용 변경 시 아래 해당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1. 사업변경 승인요청서[별도 서식] 2. (변경 후) 견적서(부가세 포함) 1부 3. (변경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작(시공) 전에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필수!
	사업 포기 시	최종 선정 후 사업 포기 시, 사업 포기 신청서[별도서식] 제출

5.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신청업체(소상공인)가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시공(제작)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스마트기술 구축 분야는 인천시 외 다른 지역 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함)
-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제작)내용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신청업체는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시공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시공한 간판이 **신고대상일 경우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신고 비대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비대상확인서(별도 서식)"** 제출해야 함
-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3개사 참여 가능함**(시공 참여 개수 초과할 경우 선정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제작(시공)비용 지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대표자) 계좌로 지급함
- **시공(제작)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전액을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신청업체가 전액 입금이 어려운 경우 자부담 입금 후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시공업체로 지급 가능함.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상의 후에 지급 가능, 임의로 처리 시 지급 불가)**
- **시공(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로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필수(현금 지급, 카드결제 불가)**
- 지출 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확인증 및 온라인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 금액, 이체 일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임**
-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단, 시공업체가 영세하여 발행 불가 시 시공업체의 매출자료 등 제출 시 예외 인정)
-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센터는 필요시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인천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 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사업 시행, 당 기관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접수 현황, 선정기준표, 개인별 점수 및 심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보완서류 미 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한 후 차순위 업체를 추가 선정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서 접수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032-715-4047)
온라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www.insupport.or.kr)>회원가입>소상공인지원>온라인 접수>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신청 · 접수 기간 : 2023. 8. 18.(금) ~ 8. 31.(목) 18시까지, 24시간 상시 접수 가능
방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www.insupport.or.kr)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지참 시 접수 불가(2페이지 제출서류 확인) · 접수 기간 : 2023. 8. 29.(화) ~ 8. 31.(목) 18시까지 [*점심시간 12:00~13:00] ▶ 접수처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별표 1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10명 미만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0명 미만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10명 미만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0명 미만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0명 미만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0명 미만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명 미만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명 미만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0명 미만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0명 미만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0명 미만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0명 미만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명 미만
15. 가구 제조업	C32		10명 미만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명 미만	
17. 수도업	E36	5명 미만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5명 미만	
19. 광업	B	10명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10명 미만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0명 미만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0명 미만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0명 미만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10명 미만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명 미만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10명 미만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10명 미만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10명 미만	
29. 건설업	F	10명 미만	
30. 운수 및 창고업	H	10명 미만	
31. 금융 및 보험업	K	5명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5명 미만	
33. 정보통신업	J	5명 미만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5명 미만	
35. 부동산업	L	5명 미만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5명 미만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5명 미만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5명 미만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명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명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5명 미만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5명 미만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5명 미만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